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 6. 30.>

해양수산생명자원 [ ] 획득허가 [ ]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6개월

신청인	기관명:	사업자등록번호:
	성명(대표자):	생년월일:
	사무실 소재지:	전화번호:
신청내용	조사사업 명칭:	
	조사책임자 성명:	
	조사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	조사 유형: [ ] 획득허가 [ ] 공동획득 허가	
공동획득에 참여하는 자	기관명:	사업자등록번호:
	성명(대표자):	생년월일:

이익공유	합의체결 여부	미체결 사유	이익공유 조건
	합의( ) 미합의( )		

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·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·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[ ] 획득허가 · [ ] 공동획득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획득허가 신청 시 - 조사계획서 각 20부(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)	수수료 없음
	2. 공동획득 허가 신청 시 가. 조사계획서 각 20부(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) 나.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·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1부 다.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1부 라.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심사 및 현지 실제 조사	→	허가 여부 심사	→	판정	→	허가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: 해양수산부		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